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0호

분기별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분기별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괄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손실보상 환수금에 대한 환수 가능성 제고 및 소상공인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분기별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대상 확대

2. 주요 내용

- (분할납부 대상 확대) 환수금 일시납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분할납부(최대 5년 범위 내) 대상을 방역위반 사업장까지 확대
- (납부기한 연장 제도 대상 확대) 비자발적 이유 (폐업, 질병 등)로 인한 환수금 납부 곤란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납부기간 연장(최대 2년 내) 대상을 방역위반 사업장까지 확대
- (문구정비) 조문내 잘못 표기된 ‘신청일 10일로부터 이내에’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로 수정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6년 10월 12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sscompensatio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3) 팩스 : 044-204-784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전화 : 044 - 204 - 78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별첨] 분기별 개정(안) 전문 각 1부. 끝.